



북 배캐빌 농촌 수도국

방침 제목: 수도고객의 단수
방침번호: 3125
채택: 2171 방침에서 5-14-2013으로 교체함
수정: 2-11-20

3125.1 아래와 같은 SB998에 따라 수도중단 (단수) 기준에 부합될 것이다. :

3125.1.1 미납이 60일이 지나지 않으면 단수하지 않는다. 60일 체납되고 요금잔액이 \$200 이상인 고객은 종료통지서를 받게 된다.

3125.1.2 단수일로부터 7일보다 적지 않은 날짜에 단수에 대해 전화, 통지서, 편지, 대면으로 고객에게 연락할 것이다. 3130 방침에 따라 조정계약서로 고객에게 알려주게 된다. 종료 통지서는 116908 건강안전법에 나온 요건이 전부 포함될 것이다.

3125.1.3 고객은 부장(GM)에게 707-447-8420 이나 이메일 gm@rnvwd.com 으로 연락하여 항소할 수 있다. 부장은 불만신고를 재고하고 해결에 대한 지시를 하게 된다.

3125.1.4 중단을 막으려면, 고객이 조정계약서 등의 별도납부약정/ 납부연기약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 지역구 사무실에 연락하거나, SB998의 116910항에 나온 모든 조건에 부합함을 증명한다.

3125.1.5 고객이 통지를 받고 8일 내에 지역구에 전화번호 707-447-8420 이나 이메일 gm@rnvwd.com 로 연락하지 않으면, 서비스는 중단되고 단수비용을 고객에게 부과하게 된다. 수도법 25806 에 따라 단수된 건물을 담보로 설정할 것이다. 지역구 비용일정에 나온 바에 따라 관련 비용/요금이 계정에 적용된다.

3125.1.6. 서비스가 중단되는 조건을 규정한 주거용 세입자와 주거지의 주인, 관리인, 운영자 사이에 집주인-세입자 관계가 있으면, 자세한 내용은 SB998의116916항을 참고한다.

3125.2 서비스가 종료된 고객에게 서비스를 복구하기 위해서, 지역구 방침 3130에 의해 고객이 조정계약서에 반드시 서명해야 하고, 또는 계정을 완납해야 한다. 지역구의 수수료 일정에 의해 고객의 장소에 서비스를 복구하는 재연결 비용을 부과하게 된다. 가구소득이 연방정부 빈곤수치의 200% 이하라고 증명한 주거용 고객에 대해서 지역구는재연결 비용으로 \$50을 부과한다.

3125.3 가구소득이 연방정부 빈곤수치의 200% 이하라고 증명한 주거용 고객이나 혹은 가족원이 캘릭스, 캘프레시, 일반보조, 메디칼, 보조보장소득/주정부보조금프로그램, 또는 여성, 유아, 아동을 위한 캘리포니아 특수보조영양프로그램으로 보조를 받으면 체납료를 12개월마다 한번씩 면제한다.